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2. . . (제 회)	

국고금관리법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추경호 (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)
제출연월일	2022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정보보안비 비목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예산비목이 개편됨에 따라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출납공무원이 지출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교부받아 지급할 수 있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와 회계연도 시작 전에 관서운영경비를 교부할 수 있는 대상에 정보보안비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.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국방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12. . ~ 12. .) 결과, 특기할 사항

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1조제1호 중 “안보비”를 “안보비·정보보안비”로 한다.

제38조제1항제2호 중 “특수활동비 및 안보비”를 “특수활동비·안보비 및 정보보안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1조(관서운영경비의 범위) 법 제24조제6항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운영비(복리후생비·학교운영비·일반용역비 및 관리용역비는 제외한다)·특수활동비·<u>안보비</u> 및 업무추진비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비</p> <p>2. ~ 4. (생략)</p> <p>제38조(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)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자금을 교부할 수 있는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업무추진비·<u>특수활동비</u> 및 <u>안보비</u></p> <p>3.·4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31조(관서운영경비의 범위) -- ----- ----- --.</p> <p>1. ----- ----- ----- ---<u>안보비·정보보안비</u>----- ----- -----</p> <p>2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제38조(회계연도 시작 전의 관서운영경비의 교부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-----<u>특수활동비·안보비</u> 및 <u>정보보안비</u></p> <p>3.·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기획재정부 국고과	
연 락 처	(044) 215 - 5112